

VI. 전형료

1 전형료 내역

모집단위 구분	일반 관리비	면접 고사료	실기 고사료	납부액
일반·학사(예체능 제외), 연계 교육과정, 농어촌지역	19,000원	30,000원	-	49,000원
디자인학과, 미술학과, 음악학과, 무용학과, 스포츠과학부	19,000원	30,000원	50,000원	99,000원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	-	-	-	-

2 전형료 면제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의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

3 전형료 환불 (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 4 및 동법 「시행령」 제43조의 3)

가. 환불 기준

구분	사유	환급신청서 제출대상
과납금액 환불	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	×
전액 환불	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○
	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○
	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)	○
면접(실기) 고사료 환불	수의과대학 1단계 불합격자	×
	지원자격 미달자	×
	구비 서류 미제출자(제출 포기자 포함)	×

※ 모든 반환금은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

나. 환불 신청방법

- 1) 제출서류: 전형료 환급신청서(서식7)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) 제출방법: 본교 방문 또는 팩스 제출(033-259-5519)
- 3) 제출기한: 2018. 1. 29.(월)까지
- 4) 환불예외사항: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(미응시)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음
- 5) 입금계좌: 지원자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계좌번호 또는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
- 6) 기타사항
 - 국가보훈대상자(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2호)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) 지원자는 제출기한까지 환급신청서(서식7)와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 납부한 전형료 전액 환불